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8.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3호로 2021년 7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대림중앙시장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 대림중앙시장 상인 및 고객,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상인들의 원활한 시장운영을 돕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

####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단위 : m<sup>2</sup>, 천원)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				비고
소재지	취득현황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	금액	단가	금액	
계	231	314.54		3,542	819,455		754,000	
대림동 1037-32	119	147.11	남**	3,721	442,799	-	417,000	건물 시가 표준액
대림동 1037-30	112	167.43	배** 외 1	3,363	376,656	-	337,000	

#### 5.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억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대림동 1037-32, 1037-30번지의 2개 건물을 매입 후 현재 건축물 2개 철거 후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상인회사 무실, 다목적실, 북카페, 아이랜드 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대상지는 대림중앙시장 및 주차장과 인접하여 시장 상인 및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며,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는 대지면적 231㎡, 연면적 276㎡의 지상2층으로 1층에 북카페 겸 고객쉼터, 상인회사무실, 다목적실을, 2층에 대림2동 아이랜드를 배치할 예정임.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21년 8월 현재 26억원(시비 5억 2,900만원, 구비 20억 7,1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 세부 사업별 소요예산은 건물취득비 19억원, 건축공사 및 철거비 10억원, 실시설계비 4,900만원, 감리비 및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이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림동 1037-32, 1037-30번지에 “대림중앙시장 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림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 및 초등학생 돌봄공간으로서 활용되어 지역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생략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